



【축산정책】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안전위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안전위생과	과장 최대휴 사무관 강대진	02-500-2101 02-500-2105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계	1,250	1,400	2,560	3,200	3,200/년
보조	625	700	960	960	960/년
융자	-	-	-	-	-
지방비	-	280	640	960	960/년
자부담	625	420	960	1,280	1,280/년

I. 사업개요

1. 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7	2008	2009		
참여농가(업체)수	400	80	175	320	2011.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수산물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지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안전위생과-2171호(2009.10.7)로 기초치)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2009.11월중)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3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2009.12월중)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팅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농장(업체)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선정(가급적

한 업체가 여러 업종(소·돼지·닭·판매업 등)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전문적 컨설팅이 되도록 유도할 것)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대상자(농업인·영업자) 등으로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2010.1월중)

- 선정된 농업인·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농가 또는 영업장 당 3,200천원)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붙임2 서식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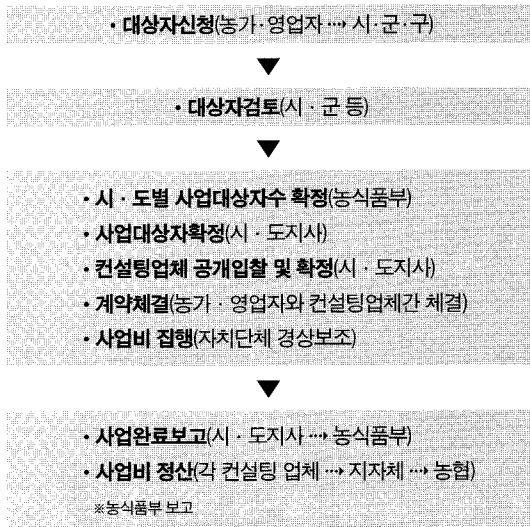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촉발기금사무국

•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0.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물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3)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100

【환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가점 부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10. 11~12월
- 수요조사 방법 등 :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업소)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HACCP 컨설팅 사업 완료보고서

구분	농장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판매업소는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비고 (이월 등)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2010. 9. 6완료
소(젖소)						2011년 이월
돼지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						

붙임 3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사육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의·축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HACCP 분야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2011년부터는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상근직원(최소 10개월 이상 정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직원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외부계약에 의한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산입하지 않을 계획임

【개별사항】

- 사육농가 : 전문인력중 수의사(최소 1명) 포함
 - 축산물작업장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HACCP 지정 완료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컨설팅(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법인 설립전 축산물 HACCP 컨설팅 실적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HACCP 분야 : HACCP교육기관에서 HACCP 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가. 사육농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축산물작업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축산, 수의, 식품관련 전공자(학사 이상)자 또는 축산, 수의, 식품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정완료 실적 10건 이상 보유자 또는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완료 실적 보유자